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54

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김동아·허성무·임호선

박균택 • 추미애 • 김남근

김영호 • 박정현 • 이정문

김문수 · 허종식 · 한준호

김준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, 해당 기업에게 행 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.

그런데,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,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(안 제11조의2).

법률 제 호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우수기업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수기업의 인증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이 취소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직무발명보상 우수기	제11조의2(직무발명보상 우수기
업 인증 등) ① ~ ④ (생 략)	업 인증 등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
	취소된 우수기업은 인증이 취
	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
	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
	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
	<u>을 할 수 없다.</u>
<u>⑤</u> · <u>⑥</u> (생 략)	<u>⑥</u> ・ <u>⑦</u> (현행 제5항 및 제6항
	과 같음)